

# 미국판

## CBAM(탄소국경조정)·CCA(Clean Competition Act) 등 논의 법안을 전제로 한 실무 대응 체계

### 1) US CBAM(미국판 탄소국경조정) 개념 요약

- 미국에서는 “수입품에 탄소집약도(**carbon intensity**) 기반 부담(관세/수수료/세 등)을 부과해, 자국 산업 경쟁력·탄소누출을 완화”하는 아이디어가 여러 형태로 논의됩니다.
- 대표적으로 **Clean Competition Act(CCA)**는 국내 생산에 성과부담(**performance fee**) + 수입품에 탄소조정(**import tariffs**)을 결합하는 형태로 소개됩니다.
- 이 외에도 **Foreign Pollution Fee Act** 등 다양한 탄소수입수수료/관세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.

---

### 2) Impact가 “높음(대미 수출기업)”인 이유

1. 범위 확대 가능성  
미국 논의안들은 EU CBAM보다 대상 산업/품목 범위를 넓힐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존재합니다(정책 설계에 따라 CITE(탄소·에너지 집약 무역노출) 섹터 전반으로 확장 여지).
  2. 데이터 요구가 ‘통관/거래조건’으로 전환될 수 있음  
법제화가 확정되면, EU CBAM처럼 “제품/공정별 배출량·증빙”이 수입·거래의 기본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(미국도 탄소집약도 기반 부과를 전제로 하면 MRV가 핵심이 됨).
  3. 선제 대응 기업이 비용/리스크 우위 확보  
법안이 어떤 형태로 굳어지든, 기업 내부에 “제품별 탄소집약도 데이터”가 없으면 가격(탄소비용 전가)·납기(검증 지연)·거래(입찰/벤더승인) 리스크가 커집니다.
-

### 3) Action: 대응 필요 — 운영 체계의 목표

#### Core Action

미국 규제 동향 모니터링 + 제품별 탄소 집약도(Carbon Intensity) 관리 체계 구축

이를 “정책 트래킹(외부) ↔ 탄소 데이터(내부)” 2개의 트랙으로 나눠 동시에 구축합니다.

---

## 4) 실행 가이드 (2트랙 운영)

### 트랙 A) 미국 규제 동향 모니터링 체계 (바로 구축)

#### A-1. 모니터링 범위(최소)

- **CCA(Clean Competition Act):** 재도입/개정 흐름, 적용 섹터(CITE), 수입품 산정·부과 구조, 시행/유예, 보고·검증 요건
- **Foreign Pollution Fee Act** 등 탄소수입수수료 법안: 적용 품목, 기준선(미국 평균 대비), 계산·부과 방식
- 탄소집약도 측정 인프라 법안/프로그램(예: **PROVE IT** 계열 논의): 미국이 산업별 탄소집약도 데이터를 “공식 산정”하려는 움직임은, 향후 국경조정 설계의 기반이 될 수 있음

#### A-2. 운영 방식(권장)

- 월간(또는 격주) 브리핑: 법안 상태(상정/재도입/위원회/표결), 핵심 변경점(대상 품목·기준·요율), 기업 영향(가격/서류/검증)
- 분기별 영향평가 업데이트: “대미 매출 TOP 품목 × 탄소집약도 × 마진” 매트릭스로 리스크 재산정
- 대외 커뮤니케이션 채널 확보: 미국 바이어/수입자(Importer)·로비/협회·통관대리인으로부터 “요구 데이터 포맷”을 선제 입수

산출물(필수): **US CBAM Watchlist**(법안별 1페이지 요약), 변경점 로그, 영향평가 매트릭스(분기 업데이트)

---

## 트랙 B) 탄소 집약도 관리(제품별) — “EU CBAM 수준”으로 올려두기

미국 제도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, 실무적으로는 **EU CBAM**에 준하는 제품별 내재배출(MRV) 체계를 갖춰두면 대부분 흡수됩니다(미국은 향후 더 넓은 산업군으로 갈 수 있어 범용 구조가 유리).

### B-1. 범위 확정(1~2주)

- 대미 수출 품목 우선순위: 매출/마진/규제 노출 기반 TOP 10 선정
- 산정 경계 정의: 제품 단위(모델/SKU/로트) + 공장/라인 경계 + 기간(월/분기)

산출물: 대상품목 리스트 + 제품·공정 경계서

### B-2. 최소 계산 구조(MVP)(3~6주)

- 활동자료: 전력·연료·원료 투입·생산량
- 배출계수: 연료/전력(지역별)·공정 계수
- 배분(Allocation): 다품종 공정의 제품별 배출 배분 규칙

산출물: 제품별 탄소집약도 산정 시트/모델 + 배분규칙서 + 가정(assumption) 등록부

### B-3. 증빙(Evidence)·내부통제(동시 진행)

미국이 어떤 방식이든 “탄소집약도 기반 부과”를 채택하면, 결국 쟁점은 데이터 신뢰성입니다.

- 증빙 패키지(제품/공장/기간):
  - 에너지 검침/구매, 생산실적(MES/ERP), 원료 투입(BOM/구매), 산식/버전 이력
- 승인 워크플로: 작성 → 검토(ESG/품질/재무) → 승인(경영)

산출물: Evidence Binder(증빙 바인더) + 데이터 계보(Lineage) + 승인 로그

### B-4. 탄소집약도 “관리”로 전환(6~12주)

산정이 끝이 아니라, 탄소집약도 **KPI**를 생산·구매 의사결정에 연결해야 합니다.

- KPI 예시: 제품별 tCO<sub>2</sub>e/ton(또는 per unit), 공정별 kWh/단위, 저탄소 원료 비중
- 개선 레버: 전력(재생/계약), 연료전환, 공정 효율, 원료 대체, 스크랩/재활용 비중

산출물: 제품별 CI 대시보드(월/분기) + 감축 액션 로그(CAPA)

---

## 5) 대미 수출기업용 “최소 체크리스트”

- (모니터링) CCA/FPFA 등 주요 법안 변경을 월 1회 이상 업데이트한다
  - (데이터) 대미 수출 TOP 품목에 대해 제품별 탄소집약도 산정이 가능하다
  - (증빙) 에너지·생산·원료 데이터가 감사 가능한 형태로 연결·보관된다
  - (거버넌스) 영업(미국 바이어 대응)–구매/생산(데이터)–ESG/재무(검토) RACI가 확정돼 있다
  - (사업영향) “탄소비용 시나리오(낮음/중간/높음)”가 가격·마진·계약조건에 반영돼 있다
- 

## 6) 추천 운영 원칙(현실적인 결론)

- 정답 법안을 기다리지 말고, “EU CBAM 수준의 제품별 내재배출·증빙”을 대미 수출 품목부터 구축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가 큼니다. (미국 논의는 다변적이지만, 공통분모는 ‘탄소집약도’입니다.)
- 동시에 **US CBAM Watchlist**로 규제 변화(대상 품목/요율/기준선/검증요건)를 추적해, 내부 산정 체계를 “맞춰 끼우는 방식”으로 조정하면 됩니다.